|  |  |  |  |  |  |
| --- | --- | --- | --- | --- | --- |
| **비거주자 개인과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35호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이하 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을 관철시켜 이행하기 위해, 비거주자 개인과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하 주소지가 없는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소득원천지 관련**  1.1 급여임금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개인이 중국 경내(이하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어 취득하는 급여임금 소득은 경내에 원천을 둔 급여임금 소득이다. 경내 근무기간은 개인의 경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내 실제 근무일과 경내 근무기간 중 경내, 경외에서 향유한 공휴일, 개인 휴가, 양성훈련 일수를 포함한다. 경내, 경외단위에서 동시에 직무를 담임하거나 또는 경외단위에서만 재직하는 개인이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기준으로 경내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 경외단위에서 동시에 직무에 담임하거나 또는 경외단위에서만 재직하고, 동시에 당기 경내, 경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임금 소득에 귀속되는 경내, 경외 근무일수가 당기 양력 일수에서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그 원천인 경내, 경외 급여임금 소득의 수입액을 계산하여 확정한다. 경외 근무일수는 당기 양력 일수에서 당기 경내 근무일수를 감하여 계산한다.  1.2 수개월분 상여금 및 지분권 인센티브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본 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소득원천지를 확정하는 경우,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서 직책을 이행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시 수취하는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 중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부분은 경외가 원천인 급여임금 소득이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서 계약 이행이나 직무 집행을 끝내고 출국한 후에 수취하는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이는 경내가 원친인 급여임금 소득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에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가 귀속되는 근무기간 중 경내 근무일수와 귀속된 근무기간의 양력일수 간 비율을 곱하는 것이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월 내 취득한 경내외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에 다른 기간에 귀속되는 여러 차례의 소득에 포함된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상이한 귀속기간에 따라 경내 원천 소득을 각각 계산한 후, 당월에 경내에 원천을 둔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수입액을 다시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수개월분 상여금은 수개월에 귀속되었으나 일시에 취득하는 상여금, 연말 추가임금, 배당 등의 급여임금 소득을 의미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일시 지급되는 수개월분 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지분권 인센티브는 주식 옵션, 지분권 옵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주식평가보상권, 지분권 장려 및 기타 주식 유가증권 인수를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취득하는 할인 또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1.3 동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취득한 보수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경내 거주자기업의 동사, 감사 및 고급관리 직무를 담임하는 개인(이하 고급관리인원)은 경내에서 직무를 이행하는지에 관계없이, 경내 거주자기업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동사비, 감사비, 급여임금 또는 기타 유사한 보수(이하 고급관리인원 보수, 수개월분 상여금과 지분권 인센티브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원천이 경내에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고급관리 직무는 기업의 정/부(총)경리, 각 직급별 총사, 총감 및 기타 유사한 회사 관리층의 직무를 포함한다.  1.4 원고료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경내기업, 사업단위, 기타 조직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원고료 소득은 그 원천이 경내에 있는 소득이다.  **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급여임금 수입액에 관한 계산**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하는 급여임금 소득은 아래 규정에 따라 경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급여임금 소득의 수입액을 계산한다. (이하 급여임금 수입액)  2.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본 조 제2.3항 규정을 제외하고,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을 각각 아래의 2가지 상황에 따라 계산한다.  2.1.1 비거주자 개인의 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에서의 누적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비거주자 개인은 경내 근무기간에 해당하고 동시에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1)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당월 경내에서 지급한 급여임금 금액/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경내 근무일수/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경내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경내 단위와 개인,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의 경내 기구와 장소를 포함한다.  경내 고용주가 소득세 추계징수방식을 채택하였거나 또는 영업수입이 없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경내 고용주가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그를 위해 근무하여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모두 해당 경내 고용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는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급여임금을 취득한 귀속 근무기간을 양력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를 의미한다.  본 공고에 열거한 공식 중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에 다른 기간에 귀속되는 여러 차례의 급여임금이 포함되는 경우, 우선 본 공고 규정에 따라 다른 귀속기간의 급여임금 수입액을 각각 계산하고, 그 이후에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을 다시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1.2 비거주자 개인의 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90일을 초과하나 183일 미만인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나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 개인이 귀속된 경내 근무기간에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3/W020190317500039296480.png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2)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 (당월 급여임금에 귀속된 근무기간 중 경내 근무일수 / 당월 급여임금에 귀속된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  2.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거주자 개인인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183일 이상인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의 경우,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을 아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2.1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인 경우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인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실시조례 제4조의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또한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한 급여임금 소득 부문을 제외하고 취득한 모든 급여임금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임금 소득 수입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3)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3/W020190317500039349390.png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 [1 – (당월 경외 지급 급여임금 금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경외 근무일수 /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  2.2.2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만 6년 이상인 경우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만 6년 이후, 실시조례 제4조 우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은 경내, 경외에서 취득한 모든 급여임금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3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인 경우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인 경우, 급여임금 수입액을 본 조 제2.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인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3.1 고급관리인원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고급관리인원이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한 급여임금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한 급여임금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은 당월 경내에서 지급하거나 부담한 급여임금 수입액이다.  2.3.2 고급관리인원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나 만 183일 미만인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나 만 183일 미만인 고급관리인원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의 경우,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동시에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한 부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은 본 공고 공식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주소지가 없는 개인 세금에 관한 계산**  3.1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 소득은 연도 종료 후, 연도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월별 또는 회차별 예납세액을 미리 원천징수 한다. 확정신고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처리하고 연간 종합소득 납부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4)  연간 종합소득 납부세액 = (연간 급여임금 수입액 + 연간 용역보수 수입액 + 연간 원고료 수입액 + 연간 특허사용료 수입액 – 공제비용 – 특별공제 – 특별부가공제 -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 적용세율 – 속산공계수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외국 국적 개인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전 급여임금 수입액 계산 시,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언어훈련비 등 8가지 항목 보조금을 기공제한 경우, 동시에 특별부가공제를 향유할 수 없다.  연간 급여임금,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수입액은 각각 연도 내 매월 급여입금 및 매회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수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2 비거주자 개인의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  3.2.1 비거주자 개인이 당월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당월 수입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공제비용을 제한 후의 잔액이자 과세표준이며, 본 공고에 첨부된 월간 단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이하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3.2.2 비거주자 개인이 1개월 내 취득한 수개월분 상여금은 단독으로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월 수입액으로 계산하고, 당월 기타 급여임금 소득과 합치지 않으며, 6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고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1개 양력연도 내 비거주자 개인당 해당 과세방법은 오직 한번만 적용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5)  당월 수개월분 상여금 납부세액 = [(수개월분 상여금 수입액 ÷ 6)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 \* 6  3.2.3 비거주자 개인이 1개월 내 취득한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단독으로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월 수입액으로 계산하고, 당월 기타 급여임금 소득과 합치지 않으며, 6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고(1개 양력연도 내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합병 계산하여야 함)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6)  당월 지분권 인센티브 납부세액 = [(본 양력연도 내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 합계액÷ 6)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 \* 6 - 본 양력연도 내 지분권 인센티브 기납부세액  3.2.4 비거주자 개인이 경내에 원천을 둔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취득한 경우, 세법에 규정된 매회 수입액이 과세표준이며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4.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관한 적용 세수 협정**  중국 정부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이 홍콩·마카오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안배(이하 세수협정)의 거주자 조항 규정에 따른 체약 상대방 세수 거주자의 개인(이하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은 세수협정 및 재정부, 세무총국 유관 규정에 따라 세수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고, 세수협정 대우를 향유하지 않고 세금납부 계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수협정 및 재정부, 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세수협정을 적용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1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고용된 소득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4.1.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외의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하는 경우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경외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고용된 소득 조항 규정에 따라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경외에서 고용된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고용된 소득을 뜻하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급여입금 소득은 경외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임금 수입액은 본 공고 공식2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원천징수 선납과 확정신고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소득 취득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4.1.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하는 경우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고용된 소득 조항 규정에 따라 세수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 경내 체재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을 뜻하며, 경내에서 고용된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고용된 소득은 경내 거주자 고용주가 지급 또는 대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경내에 설립한 기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닐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경내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임금 수입액은 본 공고 공식1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원천징수 선납과 확정신고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소득 취득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4.2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독립적인 개인 용역과 영업이윤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조항 규정에 따라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독립적인 개인 용역 소득 또는 세수협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이윤일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이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선납과 확정신고 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은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소득 취득 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4.3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동사비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이며, 해당 개인에게 적용된 세수협정에 동사비 조항이 없거나 또는 동사비 조항이 있으나 해당 개인이 동사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고, 또한 해당 개인이 취득한 고급관리인원 보수가 세수협정 고용된 소득,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조항 규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 취득한 고급관리인원 보수는 본 공고 제2조 2.3항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각각 본 조 제4.1항, 제4.2항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이며, 해당 개인이 취득한 고급관리인원 보수가 세수협정 동사비 조항 규정에 따라 경내에서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관 급여임금 소득 또는 용역보수 소득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4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조항 규정에 따르는 것을 뜻하며,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규정에 부합하는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는 세수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소득, 원고료 소득 또는 용역보수 소득이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취득 당월 세수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선납한다. 연말 확정신고 시, 해당 개인이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를 이미 향유한 소득은 연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독으로 세수 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연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소득, 원고료 소득 또는 용역보수 소득이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세수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관한 유관 징수관리 규정**  5.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경내 거주기간 예측에 관한 규정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 납세연도 내 처음 신고할 경우, 계약 약정 등 상황에 근거하여 1개 납세연도 내 경내 거주일수 및 세수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 경내 체재일수를 예측하여, 예측 상황에 맞춰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실제 상황과 예측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5.1.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비거주가 개인으로 사전에 판정되고 거주일수 연장으로 거주자 개인 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1개 납세연도 내 세금 공제 방법은 변동되지 않고, 연도 종료 후 거주가 개인 유관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처리하나 해당 개인이 당해 출국하고 연도 내 더 이상 입국하지 않음이 예측되는 경우, 출국전 확정신고 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5.1.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거주가 개인으로 사전에 판정되고 거주일수 단축으로 거주자 개인 조건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 개인 조건에 도달할 수 없는 날부터 연도 종료 후 15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비거주자 개인에 맞춰 다시 납부세액을 계산해 세금 보충납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세수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1.3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음이 예측되었으나 실제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할 경우, 또는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세수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 경내 거주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음이 예측되었으나 실제 체재일수가 183일을 초과할 경우, 90일 또는 183일이 도달할 때까지 체재한 당월 종료 후 15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이전 월별 급여임금 소득에 관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해 세금 보충납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세수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5.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경내 고용주가 보고하고 경외 특수관계자가 지급하는 급여임금 소득에 관한 규정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 재직, 채용으로 취득한 경내 원천인 급여소득은 대체로 경내 고용주와 경외 단위 또는 개인간 특수관계가 존재하기에 원래는 경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임금 소득을 경외 특수관계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경내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위탁하지 않은 경우, 경내 고용주는 관련 소득 지급 당월 종료 후 15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고, 동 정보는 경내 고용주와 경외 특수관계자가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대해 근무 안배, 경외 지급 상황 및 주소지가 없는 개인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6.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취득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금 환급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열거하는 문건 또는 문건의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1) <재정부, 세무총국의 임시 방중 인원의 실제 거주일수에 따른 개인소득세 계산 및 징수 면제에 따른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88)재세외자제059호)  (2) <국가세무총국의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의 납세의무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4]148호)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중국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어떻게 중국 거주 만 5년으로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자[1995]98호)  (4)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 납부 관련 약간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발[1995]125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5)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세수협정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5]155호)  (6)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상여금 과세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6]183호)  (7) <국가세무총국의 삼정물산㈜ 대련사무소 외국 국적 직원이 취득한 수개월분 상여금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문제에 관한 회신> (국세함[1997]546호)  (8) <국가세무총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경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9]241호)  (9)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중국에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월의 상여금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1999]245호)  (10)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유가증권 형식으로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0]190호)  (11) <국가세무총국의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세수협정 및 개인소득세법 집행 관련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4]97호)  (12)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취득한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 징수방법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5]9호) 제6조  (13) <국가세무총국의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급여임금 소득 계산과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문제에 관한 회신> (국세함[2005]1041호)  (14)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동사 또는 고급관리직무 담임하는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 적용공식에 관한 회신>(국세함[2007]946호)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월간 단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3월 14일  첨부:  **월간 단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 |  | **关于非居民个人和无住所居民**  **个人有关**  **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  |  |  | | --- | --- | --- | | |  |  | | --- | --- | | |  | | --- | | 为贯彻落实修改后的《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以下称税法）和《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以下称实施条例），现将非居民个人和无住所居民个人（以下统称无住所个人）有关个人所得税政策公告如下：    **一、关于所得来源地**  　　（一）关于工资薪金所得来源地的规定。  　　个人取得归属于中国境内（以下称境内）工作期间的工资薪金所得为来源于境内的工资薪金所得。境内工作期间按照个人在境内工作天数计算，包括其在境内的实际工作日以及境内工作期间在境内、境外享受的公休假、个人休假、接受培训的天数。在境内、境外单位同时担任职务或者仅在境外单位任职的个人，在境内停留的当天不足24小时的，按照半天计算境内工作天数。  　　无住所个人在境内、境外单位同时担任职务或者仅在境外单位任职,且当期同时在境内、境外工作的，按照工资薪金所属境内、境外工作天数占当期公历天数的比例计算确定来源于境内、境外工资薪金所得的收入额。境外工作天数按照当期公历天数减去当期境内工作天数计算。  （二）关于数月奖金以及股权激励所得来源地的规定。  无住所个人取得的数月奖金或者股权激励所得按照本条第（一）项规定确定所得来源地的，无住所个人在境内履职或者执行职务时收到的数月奖金或者股权激励所得，归属于境外工作期间的部分，为来源于境外的工资薪金所得；无住所个人停止在境内履约或者执行职务离境后收到的数月奖金或者股权激励所得，对属于境内工作期间的部分，为来源于境内的工资薪金所得。  具体计算方法为：数月奖金或者股权激励乘以数月奖金或者股权激励所属工作期间境内工作天数与所属工作期间公历天数之比。  无住所个人一个月内取得的境内外数月奖金或者股权激励包含归属于不同期间的多笔所得的，应当先分别按照本公告规定计算不同归属期间来源于境内的所得，然后再加总计算当月来源于境内的数月奖金或者股权激励收入额。  本公告所称数月奖金是指一次取得归属于数月的奖金、年终加薪、分红等工资薪金所得，不包括每月固定发放的奖金及一次性发放的数月工资。本公告所称股权激励包括股票期权、股权期权、限制性股票、股票增值权、股权奖励以及其他因认购股票等有价证券而从雇主取得的折扣或者补贴。  　　（三）关于董事、监事及高层管理人员取得报酬所得来源地的规定。  　　对于担任境内居民企业的董事、监事及高层管理职务的个人（以下统称高管人员），无论是否在境内履行职务，取得由境内居民企业支付或者负担的董事费、监事费、工资薪金或者其他类似报酬（以下统称高管人员报酬，包含数月奖金和股权激励），属于来源于境内的所得。  　　本公告所称高层管理职务包括企业正、副（总）经理、各职能总师、总监及其他类似公司管理层的职务。  　　（四）关于稿酬所得来源地的规定。  由境内企业、事业单位、其他组织支付或者负担的稿酬所得，为来源于境内的所得。  **二、关于无住所个人工资薪金所得收入额计算**  无住所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按以下规定计算在境内应纳税的工资薪金所得的收入额（以下称工资薪金收入额）：  　　（一）无住所个人为非居民个人的情形。  　　非居民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除本条第（三）项规定以外，当月工资薪金收入额分别按照以下两种情形计算：  　　1.非居民个人境内居住时间累计不超过90天的情形。  在一个纳税年度内，在境内累计居住不超过90天的非居民个人，仅就归属于境内工作期间并由境内雇主支付或者负担的工资薪金所得计算缴纳个人所得税。  当月工资薪金收入额的计算公式如下（公式一）：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3/W020190317500039233015.png    本公告所称境内雇主包括雇佣员工的境内单位和个人以及境外单位或者个人在境内的机构、场所。  凡境内雇主采取核定征收所得税或者无营业收入未征收所得税的，无住所个人为其工作取得工资薪金所得，不论是否在该境内雇主会计账簿中记载，均视为由该境内雇主支付或者负担。本公告所称工资薪金所属工作期间的公历天数，是指无住所个人取得工资薪金所属工作期间按公历计算的天数。  本公告所列公式中当月境内外工资薪金包含归属于不同期间的多笔工资薪金的，应当先分别按照本公告规定计算不同归属期间工资薪金收入额，然后再加总计算当月工资薪金收入额。  2.非居民个人境内居住时间累计超过90天不满183天的情形。  　　在一个纳税年度内，在境内累计居住超过90天但不满183天的非居民个人，取得归属于境内工作期间的工资薪金所得，均应当计算缴纳个人所得税；其取得归属于境外工作期间的工资薪金所得，不征收个人所得税。当月工资薪金收入额的计算公式如下（公式二）：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3/W020190317500039296480.png    （二）无住所个人为居民个人的情形。  在一个纳税年度内,在境内累计居住满183天的无住所居民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当月工资薪金收入额按照以下规定计算：  　　1.无住所居民个人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不满六年的情形。  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不满六年的无住所居民个人，符合实施条例第四条优惠条件的，其取得的全部工资薪金所得，除归属于境外工作期间且由境外单位或者个人支付的工资薪金所得部分外，均应计算缴纳个人所得税。  工资薪金所得收入额的计算公式如下（公式三）：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3/W020190317500039349390.png    2.无住所居民个人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满六年的情形。  　　在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满六年后，不符合实施条例第四条优惠条件的无住所居民个人，其从境内、境外取得的全部工资薪金所得均应计算缴纳个人所得税。  　　（三）无住所个人为高管人员的情形。  无住所居民个人为高管人员的，工资薪金收入额按照本条第（二）项规定计算纳税。非居民个人为高管人员的，按照以下规定处理:  　　1.高管人员在境内居住时间累计不超过90天的情形。  　　在一个纳税年度内，在境内累计居住不超过90天的高管人员，其取得由境内雇主支付或者负担的工资薪金所得应当计算缴纳个人所得税；不是由境内雇主支付或者负担的工资薪金所得，不缴纳个人所得税。当月工资薪金收入额为当月境内支付或者负担的工资薪金收入额。  2.高管人员在境内居住时间累计超过90天不满183天的情形。  　　在一个纳税年度内，在境内居住累计超过90天但不满183天的高管人员，其取得的工资薪金所得，除归属于境外工作期间且不是由境内雇主支付或者负担的部分外，应当计算缴纳个人所得税。当月工资薪金收入额计算适用本公告公式三。  **三、关于无住所个人税款计算**    （一）关于无住所居民个人税款计算的规定。  　　无住所居民个人取得综合所得，年度终了后，应按年计算个人所得税；有扣缴义务人的，由扣缴义务人按月或者按次预扣预缴税款；需要办理汇算清缴的，按照规定办理汇算清缴，年度综合所得应纳税额计算公式如下（公式四）：    年度综合所得应纳税额=（年度工资薪金收入额+年度劳务报酬收入额+年度稿酬收入额+年度特许权使用费收入额-减除费用-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依法确定的其他扣除）×适用税率-速算扣除数  　　无住所居民个人为外籍个人的，2022年1月1日前计算工资薪金收入额时，已经按规定减除住房补贴、子女教育费、语言训练费等八项津补贴的，不能同时享受专项附加扣除。  　　年度工资薪金、劳务报酬、稿酬、特许权使用费收入额分别按年度内每月工资薪金以及每次劳务报酬、稿酬、特许权使用费收入额合计数额计算。  　　（二）关于非居民个人税款计算的规定。  　　1.非居民个人当月取得工资薪金所得，以按照本公告第二条规定计算的当月收入额，减去税法规定的减除费用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适用本公告所附按月换算后的综合所得税率表（以下称月度税率表）计算应纳税额。  　　2.非居民个人一个月内取得数月奖金，单独按照本公告第二条规定计算当月收入额，不与当月其他工资薪金合并，按6个月分摊计税，不减除费用，适用月度税率表计算应纳税额，在一个公历年度内，对每一个非居民个人，该计税办法只允许适用一次。计算公式如下（公式五）：  　　当月数月奖金应纳税额=[（数月奖金收入额÷6）×适用税率－速算扣除数]×6  　　3.非居民个人一个月内取得股权激励所得，单独按照本公告第二条规定计算当月收入额，不与当月其他工资薪金合并，按6个月分摊计税（一个公历年度内的股权激励所得应合并计算），不减除费用，适用月度税率表计算应纳税额，计算公式如下（公式六）：  　　当月股权激励所得应纳税额＝[（本公历年度内股权激励所得合计额÷6）×适用税率－速算扣除数]×6-本公历年度内股权激励所得已纳税额  　　4.非居民个人取得来源于境内的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以税法规定的每次收入额为应纳税所得额，适用月度税率表计算应纳税额。  **四、关于无住所个人适用税收协定**  　　按照我国政府签订的避免双重征税协定、内地与香港、澳门签订的避免双重征税安排（以下称税收协定）居民条款规定为缔约对方税收居民的个人（以下称对方税收居民个人）,可以按照税收协定及财政部、税务总局有关规定享受税收协定待遇，也可以选择不享受税收协定待遇计算纳税。除税收协定及财政部、税务总局另有规定外，无住所个人适用税收协定的，按照以下规定执行：  　　（一）关于无住所个人适用受雇所得条款的规定。  　　1.无住所个人享受境外受雇所得协定待遇。  　　本公告所称境外受雇所得协定待遇，是指按照税收协定受雇所得条款规定，对方税收居民个人在境外从事受雇活动取得的受雇所得，可不缴纳个人所得税。  　　无住所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其取得的工资薪金所得可享受境外受雇所得协定待遇的，可不缴纳个人所得税。工资薪金收入额计算适用本公告公式二。  　　无住所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的，可在预扣预缴和汇算清缴时按前款规定享受协定待遇；非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的，可在取得所得时按前款规定享受协定待遇。  2.无住所个人享受境内受雇所得协定待遇。  　　本公告所称境内受雇所得协定待遇，是指按照税收协定受雇所得条款规定，在税收协定规定的期间内境内停留天数不超过183天的对方税收居民个人，在境内从事受雇活动取得受雇所得，不是由境内居民雇主支付或者代其支付的，也不是由雇主在境内常设机构负担的，可不缴纳个人所得税。  　　无住所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其取得的工资薪金所得可享受境内受雇所得协定待遇的，可不缴纳个人所得税。工资薪金收入额计算适用本公告公式一。  　　无住所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的，可在预扣预缴和汇算清缴时按前款规定享受协定待遇；非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的，可在取得所得时按前款规定享受协定待遇。  　　（二）关于无住所个人适用独立个人劳务或者营业利润条款的规定。  　　本公告所称独立个人劳务或者营业利润协定待遇，是指按照税收协定独立个人劳务或者营业利润条款规定，对方税收居民个人取得的独立个人劳务所得或者营业利润符合税收协定规定条件的，可不缴纳个人所得税。  　　无住所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其取得的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可享受独立个人劳务或者营业利润协定待遇的，在预扣预缴和汇算清缴时，可不缴纳个人所得税。  　　非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其取得的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可享受独立个人劳务或者营业利润协定待遇的，在取得所得时可不缴纳个人所得税。  　　（三）关于无住所个人适用董事费条款的规定。    对方税收居民个人为高管人员，该个人适用的税收协定未纳入董事费条款，或者虽然纳入董事费条款但该个人不适用董事费条款,且该个人取得的高管人员报酬可享受税收协定受雇所得、独立个人劳务或者营业利润条款规定待遇的，该个人取得的高管人员报酬可不适用本公告第二条第（三）项规定，分别按照本条第（一）项、第（二）项规定执行。  　　对方税收居民个人为高管人员，该个人取得的高管人员报酬按照税收协定董事费条款规定可以在境内征收个人所得税的，应按照有关工资薪金所得或者劳务报酬所得规定缴纳个人所得税。  　　（四）关于无住所个人适用特许权使用费或者技术服务费条款的规定。  　　本公告所称特许权使用费或者技术服务费协定待遇，是指按照税收协定特许权使用费或者技术服务费条款规定，对方税收居民个人取得符合规定的特许权使用费或者技术服务费，可按照税收协定规定的计税所得额和征税比例计算纳税。  　　无住所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其取得的特许权使用费所得、稿酬所得或者劳务报酬所得可享受特许权使用费或者技术服务费协定待遇的，可不纳入综合所得，在取得当月按照税收协定规定的计税所得额和征税比例计算应纳税额，并预扣预缴税款。年度汇算清缴时，该个人取得的已享受特许权使用费或者技术服务费协定待遇的所得不纳入年度综合所得，单独按照税收协定规定的计税所得额和征税比例计算年度应纳税额及补退税额。  　　非居民个人为对方税收居民个人，其取得的特许权使用费所得、稿酬所得或者劳务报酬所得可享受特许权使用费或者技术服务费协定待遇的，可按照税收协定规定的计税所得额和征税比例计算应纳税额。  **五、关于无住所个人相关征管规定**  　　（一）关于无住所个人预计境内居住时间的规定。  　　无住所个人在一个纳税年度内首次申报时，应当根据合同约定等情况预计一个纳税年度内境内居住天数以及在税收协定规定的期间内境内停留天数，按照预计情况计算缴纳税款。实际情况与预计情况不符的，分别按照以下规定处理：  　　1.无住所个人预先判定为非居民个人，因延长居住天数达到居民个人条件的，一个纳税年度内税款扣缴方法保持不变，年度终了后按照居民个人有关规定办理汇算清缴，但该个人在当年离境且预计年度内不再入境的，可以选择在离境之前办理汇算清缴。  　　2.无住所个人预先判定为居民个人，因缩短居住天数不能达到居民个人条件的，在不能达到居民个人条件之日起至年度终了15天内，应当向主管税务机关报告，按照非居民个人重新计算应纳税额，申报补缴税款，不加收税收滞纳金。需要退税的，按照规定办理。  　　3.无住所个人预计一个纳税年度境内居住天数累计不超过90天，但实际累计居住天数超过90天的，或者对方税收居民个人预计在税收协定规定的期间内境内停留天数不超过183天，但实际停留天数超过183天的，待达到90天或者183天的月度终了后15天内，应当向主管税务机关报告，就以前月份工资薪金所得重新计算应纳税款，并补缴税款，不加收税收滞纳金。  　　（二）关于无住所个人境内雇主报告境外关联方支付工资薪金所得的规定。  　　无住所个人在境内任职、受雇取得来源于境内的工资薪金所得，凡境内雇主与境外单位或者个人存在关联关系，将本应由境内雇主支付的工资薪金所得，部分或者全部由境外关联方支付的，无住所个人可以自行申报缴纳税款，也可以委托境内雇主代为缴纳税款。无住所个人未委托境内雇主代为缴纳税款的，境内雇主应当在相关所得支付当月终了后15天内向主管税务机关报告相关信息，包括境内雇主与境外关联方对无住所个人的工作安排、境外支付情况以及无住所个人的联系方式等信息。  　　六、本公告自2019年1月1日起施行，非居民个人2019年1月1日后取得所得，按原有规定多缴纳税款的，可以依法申请办理退税。下列文件或者文件条款于2019年1月1日废止：  　　（一）《财政部税务总局关于对临时来华人员按实际居住日期计算征免个人所得税若干问题的通知》（(88)财税外字第059号）；  　　（二）《国家税务总局关于在境内无住所的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纳税义务问题的通知》（国税发〔1994〕148号）；  　　（三）《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华无住所的个人如何计算在华居住满五年问题的通知》（财税字〔1995〕98号）；  　　（四）《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计算缴纳个人所得税若干具体问题的通知》（国税函发〔1995〕125号）第一条、第二条、第三条、第四条；  　　（五）《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缴纳所得税涉及税收协定若干问题的通知》（国税发〔1995〕155号）；  　　（六）《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取得奖金征税问题的通知》（国税发〔1996〕183号）；  　　（七）《国家税务总局关于三井物产（株）大连事务所外籍雇员取得数月奖金确定纳税义务问题的批复》（国税函〔1997〕546号）；  　　（八）《国家税务总局关于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对境外企业支付其雇员的工资薪金代扣代缴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1999〕241号）；  　　（九）《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个人取得不在华履行职务的月份奖金确定纳税义务问题的通知》（国税函〔1999〕245号）；  　　（十）《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个人以有价证券形式取得工资薪金所得确定纳税义务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0〕190号）；  　　（十一）《国家税务总局关于在境内无住所的个人执行税收协定和个人所得税法若干问题的通知》（国税发〔2004〕97号）；  　　（十二）《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个人取得全年一次性奖金等计算征收个人所得税方法问题的通知》（国税发〔2005〕9号）第六条；  　　（十三）《国家税务总局关于在境内无住所个人计算工资薪金所得缴纳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批复》（国税函〔2005〕1041号）；  　　（十四）《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担任董事或高层管理职务无住所个人计算个人所得税适用公式的批复》（国税函〔2007〕946号）。  特此公告。  　　附件:按月换算后的综合所得税率表    财政部 税务总局    2019年3月14日  附件：  **按月换算后的综合所得税率表** | | | |